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443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공표 및 위탁 근거 마련	3

I. 개요

1.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44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10.

(3) 회 부 일 : 2025. 1.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는 매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임.

그런데 해당 개정법률에는 행태조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개정법률에는 필요한 경우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위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임(안 제51조의7).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공표 및 위탁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안 제51조의7제1항), 해당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7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u>실시한다</u>. ② (생략) <u><신설></u>	법률 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① ----- ----- ----- ----- -----<u>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탁받은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u>

③ (생 략)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시행일: 2025년 2월 7일	

나. 검토의견

-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불법 마약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사기법의 일종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마약류의 양과 종류를 분석하고, 하수 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4월부터 매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채취하여 마약류를 검출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물질별·시기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고 있음.

<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일일 사용 추정량¹⁾ >

(단위: mg/일/천명)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암페타민	MDMA (엑스터시)	코카인	LSD
2020년	24.16	5.03	1.71	0.37	0.06
2021년	23.18	4.82	1.99	0.58	0.00
2022년	18.07	2.80	2.58	0.40	0.00
2023년	14.40	3.11	1.36	1.43	0.00
평균	19.95	3.94	1.91	0.70	0.02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1) 하수에서 분석된 잔류 마약류의 양에 하수 채집 지역 내 인구수와 대사율 등을 고려하여 도출된 인구 천 명당 일일 사용 추정량

□ 최근 현행법 개정으로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4. 2. 6. 개정, 2025. 2. 7. 시행)²⁾),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해당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그간 식약처는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를 수행해왔고, 해당 조사 결과는 현재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연구용역 계약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내역사업명	구분	연도별 예산		계약 내역			
					계약명	발주금액	낙찰액	수탁기관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2031-301)	마약류 불법사용 차단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	일반연구비 (260-01)	20년	1,176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1,176	1,155	부산대학교
			21년	1,176		1,176	1,153	산학협력단
			22년	1,176		1,176	1,155	부산대학교
			23년	1,176		1,176	1,155	산학협력단
			24년	1,176		1,176	1,155	외 1개사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게 할 경우 “일반연구비(260-01)”로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의 비목은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변경될 것으로 보임³⁾.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대상 수탁기관의 범위를 “기관 또는 단체”로 넓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04

3)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일반연구비(260-01목)

-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기타 연구용역 :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 관련 제반 용역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소관)」또는 개별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반 비용